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2월 1일

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대·중·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이 개정(2015.11.20)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해당 조문 전부 개정
- ※ 유효기간 연장 : 기존 2015년 11월 23일 ⇒ 변경 2020년 11월 23일
(안 제9조제7호·제8호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5조)
-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신설(안 부칙 제2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5.11.20에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을 당초 2015.11.23에서 2020.11.23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